

신학대학원 성서종합시험 시행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7조에 의거 성서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응시자격) 학생은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, 4차학기 이내에 필히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5차학기 부터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응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7. 10. 23.>

제3조 (응시절차) 성서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함께 수험료를 납부한다.

제4조 (시험일자) 성서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반에 실시하고, 일시는 시험일시 2주일 전에 공고한다.

제5조 (시험과목) 구약, 신약

제6조 (출제위원) 원장은 전조 각 과목당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의뢰한다. 단, 외국인학생을 위하여 시험문제를 영어로 출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0. 23.>

제7조 (배점 및 합격기준) 신·구약 각100점 만점으로 하고, 과목당 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불합격한 경우 신·구약 중 한 과목이 70점 이상일 경우 과목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0. 23.>

제8조 (합격결정) 성서종합시험 결과는 원장의 결재로 합격자를 공고한다.

제9조 (면제) ① 신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중 학부과정에서 성서종합시험에 합격한자와, 목사는 성서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09.3.25.>

제10조 (재시험) 성서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.

제11조 (내규의 제·개정) 이내규의 제·개정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자)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자)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(응시자격)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(면제) 2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